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」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3년 10월 29일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

### 1. 제안이유

「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재활과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사회복지를 지원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.(안 제1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.(안 제3조)
- 다. 시행계획 수립과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함.(안 제5조, 안 제6조)
- 라. 노숙인시설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명시함.(안 제7조)
- 마. 노숙인시설의 지도·감독 및 교육에 관하여 규정함.(안 제9조, 안 제10조)

### 3. 의견 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4일  
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사무국  
[주소 :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(당산동3가 3번지), 전화 : 2670-3603,  
팩스 : 2670-3617]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영등포구 내 노숙인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노숙인 등"이란 「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2. "노숙인시설"이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.
3. "노숙인시설 종사자"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노숙인 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를 말한다.

**제3조(구청장의 책무)**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고, 보호와 재활 및 자활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적용범위)**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5조(시행계획의 수립 등)** ① 구청장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행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.

1. 노숙인 등에 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
2. 노숙인 등의 발생 예방·사후관리 및 감소 방안
3. 노숙인 등의 보호·재활 및 자활에 관한 사항
4. 노숙인 등의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
5. 노숙인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
6. 노숙인 일자리 및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
7.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
8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6조(지원대상 사업)** 구청장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상담 및 보호 서비스
2. 급식 서비스
3. 응급조치·건강진단 및 재활 등 의료지원 서비스
4. 자활·자립을 위한 주거지원 및 고용지원 사업
5. 노숙인 등의 자활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
6. 노숙인 등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
7. 그 밖에 노숙인 등의 복지증진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업

**제7조(노숙인시설의 설치·운영)** ① 구청장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·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시설을 설치·운영 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숙인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**제8조(비용의 지원)**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노숙인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·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이 설치한 노숙인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**제9조(지도·감독)**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비용의 지원을 받는 노숙인시설을 지도·감독하며,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노숙인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**제10조(교육)** 구청장은 노숙인 보호사업 종사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등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